

## 직권 조치 결과 공고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2024년 07월 15일

우정읍장 인  
화성시 우정읍  
장인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직권 조치 사항 직권 조치 일자
문 *수	문 *수 1960-10-12	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조암북로68번길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4-07-03